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Roman Investment Free Guideline and Process)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주)로만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고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수수료의 부과기준)

기본수수료는 펀드별 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효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수료 부과에 있어 적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4조(성과수수료의 부과기준)

성과수수료는 펀드별 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효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수료 부과에 있어 적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 절차)

-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④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

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명 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 등)

-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